



삼일회계법인

디지털자산 패권 전쟁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July 2025



Contents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4
1.1 배경: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 약화	5
1.2 정책 추진의 목적	6
1.3 정책 현황	7
2. 왜 스테이블코인인가?	13
2.1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이해	14
2.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17
2.3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국제기구 및 주요국	18
3.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4
3.1 긍정적 효과: 국제 금융시장 내 달러화 패권 강화	25
3.2 부정적 효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26
3.3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관리 방향성	28
4.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과 전망	30
4.1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	31
4.2 이재명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34
5. 시사점	36
[Appendix. 1] 디지털자산 관련 기초 용어	40
[Appendix. 2] 디지털자산의 분류	41

들어가며

주요국이 코인과 토큰 등을 '가상자산'이라 칭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가 사용하는 'Virtual Asset(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준용한 것이었다. 해당 명칭은 '가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즉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성장을 지속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명칭이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Cryptography)를 강조하며, 가상자산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산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

최초의 암호화폐²⁾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은 2008년. 화폐의 오랜 역사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역사는 극히 짧은 17년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화폐보다 그 파급력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질 경우 글로벌 금융질서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디지털자산의 한 종류

0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펼치고 있는 과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패권 유지다. ▲**실물 부문에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1 배경: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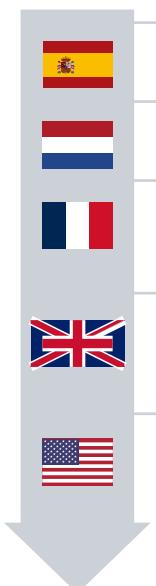
기축통화(World currency)는 외환시장에서 삼각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통화, 즉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17세기 전후 스페인 은화가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서 유럽 대륙 동쪽까지 널리 사용된 것이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라고 여겨진다.

이후 기축통화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의 통화로 변천사를 겪었으며, 20세기부터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였다. 1·2차 세계대전 중 무기와 식량 구입을 위해 전세계 금의 70%가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유일 기축통화국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 비용 급증으로 금태환 정책을 폐지(1971년) 하며 달러화 위상이 잠시 흔들린 적이 있으나,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원유 거래 결제 수단으로 오직 달러만 취급)' 체제로 기축통화국의 입지를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 달러화가 실질적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은 지 100년이 지났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수명은 100년 정도였다. 영국 파운드화, 프랑스 프랑화, 스페인 페소화 모두 그 고비를 넘지 못했다.

100년 주기와 맞물려 달러 패권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달러를 대신할 통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러 독주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미국의 부채 부담·위안화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¹⁾ 부상이 달러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현재 달러 패권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축통화 변천사



	스페인 페소화	1530~164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민지의 금/은을 바탕으로 해상무역 장악
	네덜란드 길더화	1640~17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암스테르담에 최초의 근대 은행 설립 후 수표 발행
	프랑스 프랑화	1720~18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서부 아프리카 및 일부 태평양에 식민지 설립 후 프랑화 고정환율 적용
	영국 파운드화	1815~19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기축통화금에 연계하는 금본위제 도입
	미국 달러화	192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1차 세계대전 후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부상브레튼우즈 체제(1944년)로 기축통화 공식화금태환 정지(1971년) 이후에도 '페트로 달러'로 기축통화 지위 유지

Source: 삼일PwC 경영연구원

1)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중앙은행 지준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

1.2 정책 추진의 목적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2기 정부는 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고 하는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의 한 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화를 유도하여 달러화 위상을 강화하고, ▲재정적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디지털자산을 통한 달러화 위상 강화

달러화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현재 지구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량의 21%는 달러이며, 국제 무역결제의 44%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2023년 기준). 그러나 IT 발전과 함께 등장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기반 블록체인 기술은, 달러가 아니어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부채 상환을 요구하면 달러를 찍어 갚을 수 있었지만,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36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 디지털자산은 거래의 매개체·지불수단·가치저장수단 등의 측면에서 중앙은행 법정통화인 달러보다 덜 효과적이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자본과 인재의 미국 집중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자산 기술표준 선점을 통해 글로벌 자금흐름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달러화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부채 부담 감소

2024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8,330억 달러이다. 이 중 1조 1,330억 달러(재정적자의 62%)가 이자비용이며, 이는 36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부채에 따른 결과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2기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 심화와 국가 부채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2025년 6월 기준 전 세계 총 발행량의 0.95%에 해당하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세로 환산시 200억 달러 규모이다. 또한 다른 종류의 코인까지 감안시에는 약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모는 미국 정부부채의 0.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운 규모이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면 **▲비트코인 등의 장기 보유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건전화 시킬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²⁾ 발행을 통한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국채금리(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1) 비트코인 총발행량은 2천1백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25년 6월 기준 총 발행량의 94.3%인 1천986만 개 발행. 이 중 비트코인 ETF가 약 130만 개, 민간 기업 약 40만 개, 각국 정부가 약 51만 개 보유(미국 19.8만 개, 중국 19만 개, 영국 6.1만 개, 우크라이나 4.6만 개)

2) 가격이 일정한 암호화폐로, 대부분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하여 미국채의 신수요 창출 가능

1.3 정책 현황

전체 방향성

미국통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통된 의견을 보이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점은 양 당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왔다. 디지털자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미국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¹⁾으로 비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vs. 트럼프 2기 행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비교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분류	트럼프 2기 행정부(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상자산시장 확대는 인정가상자산은 투기적 자산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필요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지칭하며, 친화적 접근자유로운 금융활동 보장 강조바이든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 기조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 계획 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명확: 집행 규제* 중심 <p>*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벌 부과, 필요시 강제 조치 시행 등에 초점</p>	규제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명확: 입법을 통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CBDC 중심	지급수단 토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테이블코인 중심CBDC 반대하며, 기존 정부 정책 전면 폐기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과 및 미국 국세청의 투자자 거래내역 접근 허용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중심 규제 관할권 인정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소한의 규제 프레임워크 & 특별한 안전장치 마련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1) 국가나 기업이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산. 대표적 전략자산은 금, 석유, 외환보유고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자산 육성에 대해 후보 시절 공약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이미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25.1.23)」와 「비트코인 전략 비축(‘25.3.6)」이라는 두 개의 주요 행정명령¹⁾에 서명하였으며, 관련 기관 주요 수장의 인사 교체를 빠르게 단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및 이행 현황

공약	이행 현황
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자진 사퇴
2.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비트코인 전략 비축(‘25.3.6)」 행정명령 서명
3. 미 정부 보유 20만 비트코인 매도 금지	
4.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건설	「디지털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25.1.23)」 행정명령 서명: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지원, 자체 보관 권리 보호, 규제 및 혁신 지원
5. 암호화폐 규제 완화	
6. 개인의 암호화폐 자체 보관 권리 보호	
7.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
8. 비트코인 채굴업 지원	채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전력 공급 안정화 등 검토 진행 중
9.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출범	재무부·법무부·SEC·CFTC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단」 신설(‘25.1.23)
1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트럼프 대통령, CBDC 개발 공식적 중단. 미 하원, 「CBDC 발행 금지법」 의회 제출(‘25.3)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다음 장에서는 입법, 행정, 인사명령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집행 명령 권한. 의회 사후 승인이 불필요하며, 대법원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율성을 인정받고 있음

입법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입법안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방향이다. 해당 입법안들은 ▲디지털자산 규제 범위 명확화, ▲CBDC 반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을 골조로 하고 있다. 미국 119대 의회의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다수당인 점 고려시, 디지털자산 주요 법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하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입법안(118대 연방의회: '23~'24년)

핵심 내용	의안 번호	발의 의원	법안명/ 내용	진행 현황
규제 명확성	H.R.9579	존 로즈 (공화당)	BRIDGE Digital Assets Act •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합동 자문위원회(JAC) 설립	하원 발의
	H.R.4763	글렌 톰슨 (공화당)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 •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하원 통과
	S.2281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Financial Innovation Act • 디지털자산 구분 기준 및 규제 기관 명확화 •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 소비자 정보 공개 등	상원 발의
CBDC 반대	S.3801	테드 크루즈 (공화당)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상원 발의
	H.R.1122	톰 에머 (공화당)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하원 발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S.4155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Payment Stablecoin Act •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강조, 규제 기준 명확화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담보 기준 설정	상원 발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S.4912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BITCOIN Act of 2024 • 비트코인 국가전략자산 채택 • 비트코인 1백만개 확보 (현재 20만 개 보유, 80만 개 추가 획득)	상원 발의

Source: 미국 의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19대 연방의회 상원에서 발의된 「GENIUS Act」와 하원 발의된 「STABLE Act」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사전승인 의무, ▲발행 총량과 동일한 준비금 의무, ▲인정되는 준비자산 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2.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입법안(119대 연방의회: '25~'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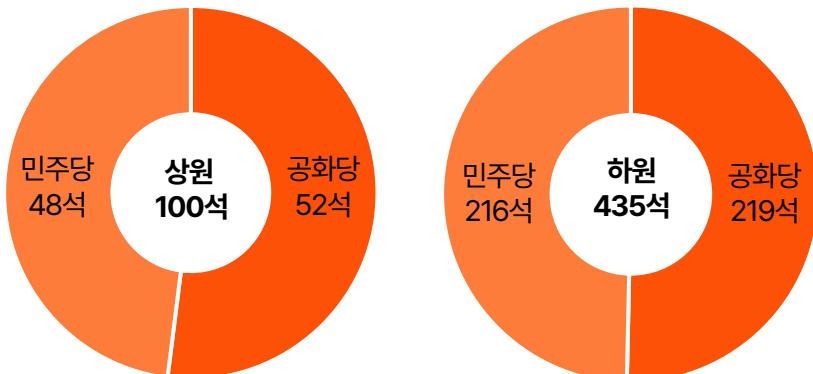
핵심 내용	의안 번호	발의 의원	법안명 / 내용	진행 현황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S.394	빌 해거티 (공화당)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 금융 안정성 보장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규제	상원 통과
	H.R.2392	브라이언 스타일, 프렌치 힐 (공화당)	STABLE Act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사전승인의무 사항 규정	하원 발의

Source: 미국 의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 법 제정 절차 및 의회 구성 현황

- 미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상·하원 구분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 또한 본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법안이 최종 성립
- 2025년 1월 시작된 미국 119대 의회('25~'26년)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며, 118대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한 상·하원의원이 모두 잔존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미국 119대('25~'26년) 의회 구성 현황



Source: 미국 의회, 삼일PwC경영연구원

행정: 미국 내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거래위원회)가 각각 증권법과 상품거래법에 근거하여 관할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관련한 금융시장안정·국가안보·자금세탁·과세·불건전 금융활동 등에 관한 규제 관할권은 재무부인 Treasury가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기관의 디지털자산 관련 관할권

기관	디지털자산 관련 관할 ¹⁾
SEC 증권거래위원회	디지털자산증권(토큰증권) 거래에 대한 총괄적 규제
CFTC 상품거래위원회	i) 상품(commodity)인 가상자산, ii)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Treasury 재무부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시장안정·국가안보·자금세탁·불건전 금융활동 등에 관한 총괄적 규제
IRS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탈세방지
OCC	은행 등의 디지털자산 거래 및 보유에 관련한 규제
FinCEN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된 AML(자금세탁방지) 및 CFT(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
OFAC	미국의 경제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국가·개인·단체와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
OTFI	디지털자산 관련 AML, CFT, 금융제재 등에 관한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정책 수립

Source: 자본시장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디지털자산 규제기구의 주요 수장에 親디지털자산 성향의 인물들을 임명하였다. 기존에는 SEC와 CFTC, 재무부 간 디지털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시장이 혼란을 겪었으나, 금번 인사로 디지털자산에 대해 우호적 기조와 부처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1)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권이 다소 불명확. 이에 따라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법안에 '규제 기관의 역할 명확화'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디지털자산 관련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

폴 앤킨스 SEC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 디지털자산과 핀테크 기업의 강력한 지지자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는 것이 SEC가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부터 테슬라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하였으며, 약 1만 2천개 상당을 보유. 이는 약 12억 달러 수준('24년 말 기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서비스 기업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인, 테더(Tether) 지분 5% 보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 편입 추진 암호화폐를 금융 자유의 상징으로 평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반대
J.D. 밴스 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 '23년 재산 공개 당시 약 25만~5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
데이비드 삭스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당 행정부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행정: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디지털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25.1.23)」와 「비트코인 전략 비축 ('25.3.6)」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해당 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자산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모든 정책·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폐지, ▲재무부·법무부·SEC·CFTC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단' 신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CBDC 발행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행정명령	디지털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25.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철회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창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유통 및 사용 금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 및 성장 촉진으로 미국 달러의 패권 강화
	비트코인 전략 비축('2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설립 정부 디지털자산은 특수한 상황 외에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불가
조치	SEC,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제약하는 회계지침(SAB 121) 폐지('25.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B 121으로 인해,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시 수탁금 전액이 부채로 계상되어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 해당 지침 폐지로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확대 예상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02

왜 스테이블코인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취임 후 3일 만에 행정명령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을 금지하고 달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기로 결정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이는, CBDC 중심의 지급수단 토큰화를 추진한 바이든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다. 본 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왜 스테이블코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보겠다.



2.1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이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같은 일반암호화폐, ▲테더 등의 스테이블코인,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교환의 매개로 활용하기 어려우나, 스테이블코인은 비교적 낮은 변동성 덕분에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한편, 암호화폐의 확산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주도권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교환의 매개라는 관점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모두 사용 가능하나, 바이든 정부(민주당)와 트럼프 정부(공화당)은 두 암호화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통화별 특징

구분	일반화폐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	일반 암호화폐
발행주체	중앙은행		민간 기업	
발행형태	실물(지폐, 동전)		디지털	
기술	해당 없음		블록체인 기술	
발행규모	중앙은행 통제		암호화폐별 상이	암호화폐별 상이
교환가치	액면가		특정자산(법정화폐, 금 등)과 1:1 연동	암호화폐별 상이
통제 구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		민간 중앙기관 통제	탈중앙화 목표
화폐가치 변동성	극히 미미		매우 낮음	높음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치가 액면가로 고정된다는 점이 실물화폐와 같지만, CBDC가 분산원장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되는데 반해 실물화폐는 그 형태가 지폐와 동전이라는 점이 다르다. CBDC는 간편결제 가입 또는 특정 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범용적 사용이 가능한 현금의 성격을 갖는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반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주요국은 정부의 화폐 통제권과 경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해왔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CBDC는 실물 형태가 없을 뿐 법정화폐에 해당하므로 발행량이 통화량과 직결된다. 따라서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인 만큼 CBDC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제한된 네트워크 내에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발행 국가의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라는 점도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점이다.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 등이 발행하고, 그 가치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과의 교환 비율로 고정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현재 통용되는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국 달러와 1:1의 교환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담보 유무를 기준으로 담보형과 알고리즘형(무담보)으로 나눌 수 있으나, 알고리즘형 코인의 지속적 실패 이후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다. 담보형은 담보 종류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면 법화 담보형,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면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다. 달러 담보형을 생각해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증가는 달러 통화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담보자산 확보 과정에서 기존에 발행된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금융 인프라가 미진한 국가에서는 은행 계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정책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85% 가량 증가해 2,570억 달러(CoinMarketCap, 2025년 6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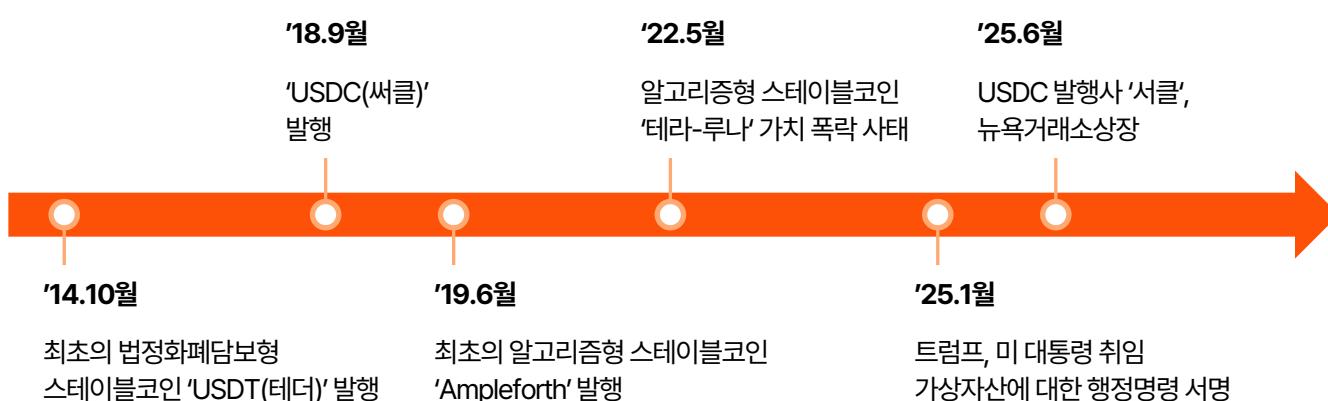
2025년 6월 말 CoinMarketCap 기준 234개의 스테이블코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7개 코인 모두 담보형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CBDC vs. 스테이블코인 장·단점 비교

구분	CBDC	스테이블코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정화폐와 동일한 안정성 보장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정화폐 등에 연동되어 낮은 가격변동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글로벌 거래에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관리의 주체인 중앙은행이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빅 브라더'가 될 리스크 존재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해킹·시스템 장애 발생 시 치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 주체(민간)의 담보자산 부실 가능성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스테이블코인 발전사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스테이블코인 (2025년 6월 20일 기준)

구분	발행사	시가총액(십억 원)	유통 공급량
USDT	테더(Tether)	213,455	155,870백만 USDT
USDC	서클(Circle)	83,837	61,230백만 USDC
USDe	에테나(Ethena)	7,667	5,590백만 USDe
Dai	메이커다오(MakerDAO)	7,345	5,360백만 DAI
USD1	월드리버티파이낸셜 (World Liberty Financial)	3,011	2,190백만 USD1
First Digital USD	퍼스트디지털 랩스 (First Digital Labs)	2,046	1,490백만 FDUSD
PayPal USD	페이팔(PayPal)	1,296	947백만 PY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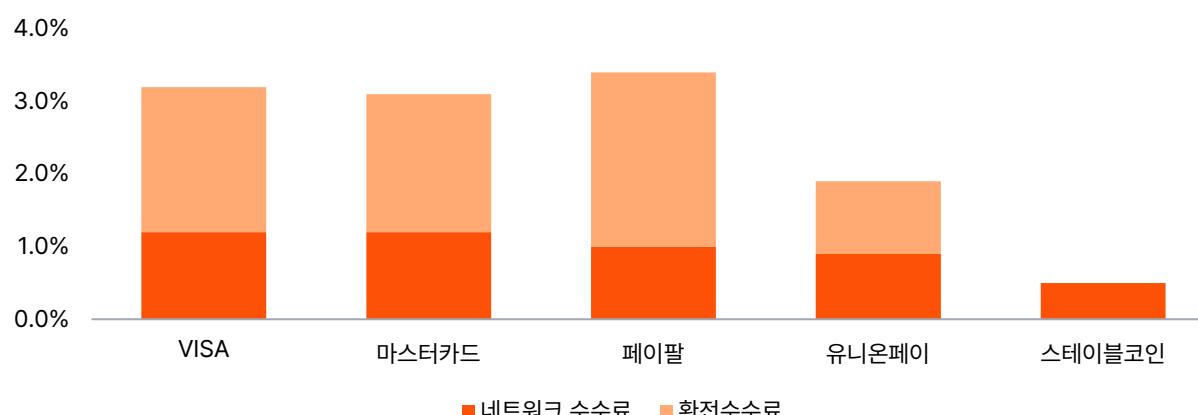
Source: CoinMarketCap, 삼일PwC경영연구원

스테이블코인 사용 용도

용도	비중	내용
결제 및 송금	50%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제 및 송금 온라인 쇼핑 및 서비스 결제
담보자산 및 대출	30%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Fi 프로토콜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거나 대출
트레이딩 및 헤징	15%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 대체 가격 변동 위험 헤징
실물 자산 연계	5%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실물 부동산 토크나
정부 및 기업 활용	점진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전용 스테이블 코인(JPM Coin 등)

Source: Despread, Coingecko,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해외 송금결제 수수료 비교



Source: 각 사,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2.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은 CBDC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과 CBDC의 유용성 연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10월 미 재무부는 CBDC가 미래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CBDC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과 7개국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 등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¹⁾에 미국이 참여한 배경에도 이 같은 CBDC에 우호적인 정부의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부터 CBDC 폐지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정책 급선회가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인의 금융거래 통제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 내 CBDC 발행 및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 규제를 강조한 바이든 정부에 대비해, 민간 주도의 혁신 창출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 될 경우, 발행주체는 미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채 시장 활성화 및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3 정책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 의회에서는 상원의 「GENIUS Act」와 하원의 「STABLE Act」가 각각 상정되어 있으며, 2025년 중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미국 회사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 의회 상정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구분	GENIUS Act	STABLE Act
주요 추진자	• 공화당 중심(빌 해거티 등)	• 공화당 중심(브라이언 스타일 등)
준비금 요건	1:1 준비금 유지 필수 • 인정되는 준비금: 미 국채(3개월), 연준 예치금, 은행 예금, 만기 7일 이하 RP/RRP, MMF • 준비금 담보/재사용 금지 • 월별 준비금 내역 공시 및 감사	1:1 준비금 유지 필수 • 인정되는 준비금: 미 국채(3개월), 연준 예치금, 만기 7일 이하 RP • 준비금 재사용 금지 • 월별 준비금 내역 공시 및 감사 • 알고리즘/가상자산 담보형 발행 금지
규제 관할	[발행규모 100억 달러 이상] - 연방 규제 • 은행: 연준 감독 및 승인 • 비은행: 통화감독청(OCC) 감독 및 승인 [발행규모 100억 달러 미만] - 주(州) 정부 규제 적용 선택권	연방 기준 준수(주정부 발행 일부 허용) • 은행: 연준 감독 • 비은행: OCC 감독
기타	• 기존 법률 내에서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허용 • 알고리즘형 모니터링 및 연구 권고	•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해 별도 승인 필요 • 알고리즘형 발행 2년 간 유예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1)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F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토큰화 된 은행 예금과 중앙은행화폐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7개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멕시코) 중앙은행과 각국 주요 민간금융기관이 함께하며, 한국은 2024년 4월 참여를 발표

2.3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1) 국제 기구

금융 관련 주요 국제 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디지털자산시장 전반에 대해 규제·감독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 및 감독 전반의 프레임워크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려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

- 2023년 7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규제·감독 권장사항을 골자로 하는,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을 발표
- “동일한 활동과 위험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 적용”을 강조하며, 고객 자산 보호, 이해상충 위험 해결,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일관된 규제 적용 권고
-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력 하의 규제·감독을 위한 국제표준 준수, 당국의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등을 권장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

-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건전성 규제를 정하고, 2024년 7월 최종 개정안을 발표. 규제 대상에는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NFT 등이 포함되며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기준 2025년에서 연기)
- 은행은 건전성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두 그룹으로 분류해야 하며, 두 그룹 모두 유동성, 레버리지 비율, 공시 요건 등이 적용
 - 그룹1 자산: 토큰화된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및 전통자산과 연계되어 안정성이 담보된 스테이블코인. 기존 바젤 체계와 같은 수준의 자본요건이 요구. 다만,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취약점이 발견되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다 강화된 자본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룹2 자산: 무담보형 암호화폐,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등 그룹1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자산들이 포함. 금융기관의 그룹2 자산 익스포저는 Tier 1 자본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도 1% 이내를 유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기준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이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을 도입
- 해당 규제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자산 이전 시 해당 정보를 수집·공유해야 함
- 다만, 2024년 FATF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관할 국가의 30%는 아직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2.3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2) 주요국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체계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 사이에서 다소 상이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고, 세부 규정들도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는 미국(트럼프 2기 행정부)과 일본·EU이며, 중국은 CBDC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CBDC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친화적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및 CBDC 정책 동향

(각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 표시)

구분	스테이블코인	CBDC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 GENIUS Act 및 하원의 STABLE Act 상정 → 2025년 중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통과될 전망 ✓ 비은행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100억 달러 이상 발행 시 OCC 감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CBDC 발행 금지 • 국가 간 CBDC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이탈 가능성 확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항마로 디지털 위안화와 연계한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 연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CBDC 연구개발 시작 ✓ 2019년 말부터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인 대상 CBDC 실험 진행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및 주요 의무를 규제한 MiCA 전면 시행 ✓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의 유럽 내 거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CBDC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중(영국, 프랑스, 스위스) ✓ 2025년 말까지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 결정 예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PSA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시스템 정립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은행업/자금이체업 등 특정 라이선스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CBDC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중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논의 중 • 아직까지 구체화된 제도는 미비하나,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CBDC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중 ✓ 2025년 4월~6월 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실시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중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소극적 vs. CBDC
중심의 암호화폐 육성
정책**

중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및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CBDC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다.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 등 민간 기업의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자, 새로운 소매결제 수단으로 CBDC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검토해왔다. 2014년 CBDC 연구개발을 시작한 데 이어 2019년 말부터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했고,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회 삼아 대규모 CBDC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실험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명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었던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해 식당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위안화 거래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은 CBDC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중국 CBDC 개요

구분	내용
발행주체/신용기반	중국인민은행/ 국가 신용
연구시작 시기	2014년
운영체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이중 운영체계
자산 준비금	상업은행은 CBDC 발행량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은행에 납부
사용 용도	소액 지급결제, 초국경 지급결제
목표 사용자	중국 사용자 → 점진적으로 글로벌 확대 목표
감독 방식	중국 정부 직접 감독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최근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국가 간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겠지만, CBDC의 특성 상 정부가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우려가 높아, 향후 중국판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럽: MiCA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유로 전략

EU는 2022년 3월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The European Union's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암호자산시장법) 발표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규제안에 추가하여 2024년 12월 전면 시행했다.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방식에 따라 ▲법정화폐와 1:1로 교환·발행되는 전자화폐토큰, ▲법정화폐·암호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에 기반한 자산준거토큰으로 구분된다.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의무(수탁기관을 통한 자금 관리, 백서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 등)를 수행해야 하며, 발행자에 있어서도 특정 규제가 적용된다.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인가 받은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이 발행 가능하고,

▲자산준거토큰은 EU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럽은행감독청·유럽중앙은행(ECB) 등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 발행할 수 있다. MiCA 규제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USDT, DAI, FDUSD 등)에 대해서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 중단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편, ECB는 2025년 말까지 CBDC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유럽은 아직 단일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부재하여 비자 등 非유럽계 카드 의존도가 높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통해 유럽의 금융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일본 금융청은 2022년 6월 자금의 송금 및 결제 규제안 PSA(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반을 확립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발행주체·취급 라이선스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해당 개정안이 2023년 6월 본격 시행되었다.

PSA에서 규정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에 속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상품구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즉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이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상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정화폐에 기반하는 디지털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은 다시 4가지 유형(제1~4호)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발행자 라이선스에서 차이가 있다. ▲제1호, 제2호의 발행자에게는 은행업 및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제3호 발행자에게는 이보다 완화된 신탁업 및 특정금전신탁업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제4호의 경우, 금융청이 별도 지정한다. 각 주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이 상이한데, 최대 송금 가능 금액이나 수취인 제한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본격화된 지 2년이 되어감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모든 준비금을 요구불예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제는 사업 운영에 큰 제약이 된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 코인 발행자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국채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교

구분	유럽 MiCA (암호자산시장법)	일본 PSA (자금결제법)
법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금융법을 개정·준용
정의/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화폐토큰: 법정화폐와 1:1로 교환되어 발행 자산준거토큰: 법정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화폐형: 법정화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물품·서비스 대가 (지급결제수단)로써 불특정다수가 매매 가능한 재산적 가치 제2호: 제1호와 상호교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제3호: 특정금전신탁수익권 제4호: 금융청 별도 지정 암호자산형: 암호자산 기반
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화폐토큰: 인가받은 은행/전자화폐기관만 발행 자산준거토큰: EU 내 설립되어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 등 인가를 받은 법인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2호: 은행업 및 자금이체업 라이선스 제3호: 신탁업 및 특정금전신탁업 라이선스 제4호: 금융청 별도 지정
준비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화폐토큰: 고객 예치금의 30%를 분리·보관 자산준거토큰: 준거자산 위험 등에 상응하는 적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은행 요구불예금만 허용

Source: 한화투자증권,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
CBDC에 집중. 다만,
新정부 정책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집중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디지털 경제 전환에 있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보다는 법정화폐로 가치가 보장된 CBDC가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한 한국은행은 2024년부터 BIS와 7개국 중앙은행 등이 공동 참여한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CBDC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한 7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들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예금과 토큰으로 교환하고, 고객들이 경제활동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 종료 후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후속 거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한강: 예금 토큰을 이용한 오프라인 매장 구매 절차 예시

- ① 판매금액 확인 후 QR 생성 요청 ② 비밀번호 입력 ③ QR 제시 → 스캔(POS, 패드) ④ 결제 완료



Source: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CBDC 테스트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긍정적 검토하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99%에 육박하고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新 정부 출범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03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 디지털자산 전략의 양대 축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화 패권 강화이다. 금과 같이 채굴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는 정책의 결과(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를 예상하기 쉽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그 영향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긍정적 효과: 국제 금융시장 내 달러화 패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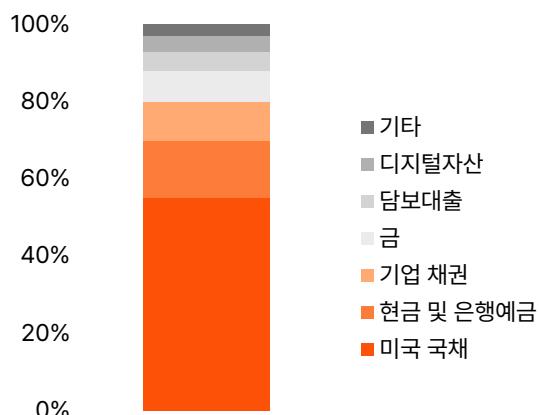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외환 거래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었다. 외화 송금은 영업일 기준 2~5일 소요되고 수수료가 발생하며, 외국환거래법 상 특정 외환 거래는 감독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이 모든 규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실시간 결제로 환율 리스크를 줄여주는 스테이블코인은 개인 및 기업에게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연간 거래량이 35조 달러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연간 약 15.7조 달러)와 마스터카드(9조 달러)의 처리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외환 시장과 비교하면 역할이 아직 미미한데, 2024년 4월 기준 글로벌 외환 시장의 거래량이 일평균 11조 달러(연 환산 시 4,000조 달러)에 육박하는 점 고려 시,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시장 내 거래 점유율은 1% 내외이다. 향후 규제 환경이 정비되면서 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통용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USDT(발행사: 테더)가 65%, USDC(발행사: 서클)가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주요 코인은 주로 미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인 테더는 준비금의 50%를 미국채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를 보유하여 글로벌 19위의 미국채 보유기관이다. 특정 국가의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상승하므로,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는 달러화 패권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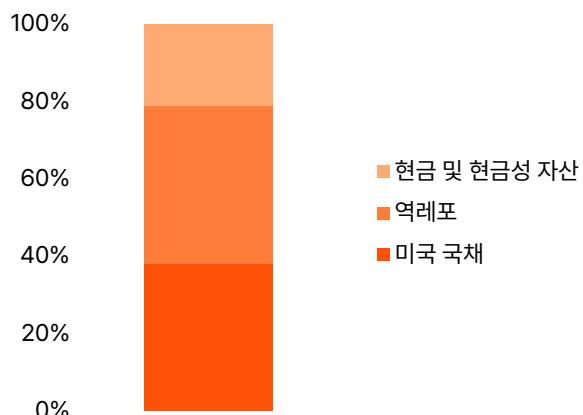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서는 준비금으로 미국채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인 발행 확대 → 미국채 수요 증가 → 조달금리 (국채 이자율) 하락 및 달러 가치 상승’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현황

USDT(테더) 준비금 현황



USDC(서클) 준비금 현황



Source: 테더('25.3월 기준), 서클('24.11월 기준), 삼일PwC경영연구원

3.2 부정적 효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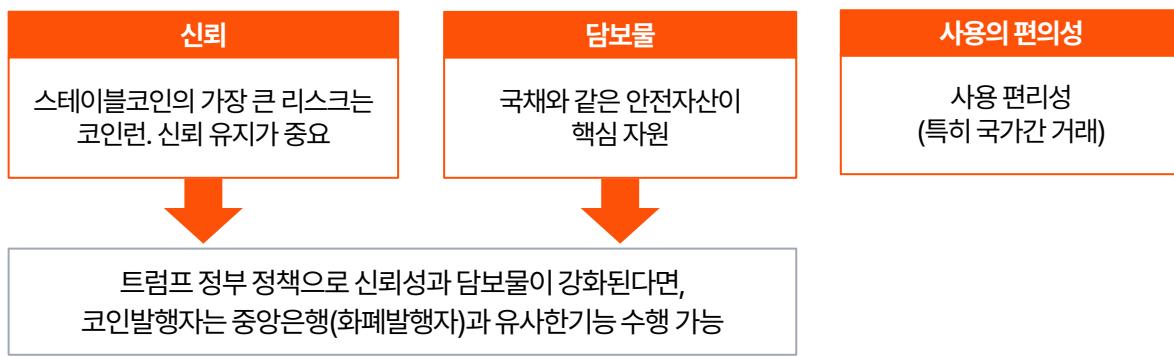
중세 봉건영주는 주화를 독점적으로 제조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 예를 들어 0.1파운드의 금과 0.9파운드의 구리를 사용해 주화를 제작하고, 그 표면에 '금화 1파운드'라고 기재 후 자신의 관할 구역 내 모든 금전거래에 해당 금화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0.1파운드의 금으로 1파운드의 통화가치를 만들어내며 9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화 제작을 독점한 탓에 봉건영주(시뇨르:Seigneur)는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이러한 주조차익을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대의 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이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 연이자 4%의 미국채를 매입한다면, 무이자 조달비용으로 4%의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뇨리지는 'inflation tax'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화에서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부가 중앙은행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이 낮다면, 통화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 코인 발행업자는 현금을 받고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매입 후, 그에 준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해줄 뿐이다. 즉 현금이 코인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정부가 해당 기능을 보증한다면, 코인은 사실상 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코인 발행업자는 이전처럼 '유입된 현금만큼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코인발행자는 중앙은행과 동일한 권력을 갖게 된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등장은, 중앙은행 말고도 통화 창출권을 가진 민간업자가 추가로 생겨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코인업자 간의 시뇨리지 창출 경쟁이 격화될 경우 통화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인플레이션과 부채 위기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정책은 힘을 잃게 되어, 인플레이션 발생 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필수 요소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시중은행과의 경쟁 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모델은 ▲고객 예치금 투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 수익으로 구분 가능한데, 해당 구조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29페이지 'Samil Focus'에서 상세 설명). 아직까지는 대출 기능이 미미하지만, 향후 대출부문 확대 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강력한 신규 경쟁자가 출현한 것이며, 이는 예금·대출·투자 전반에 걸쳐 은행의 수익모델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은행 대출부문과의 경쟁 가능성이다. 은행 수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하는 이자수익이다(한국 기준, 은행 수익의 90%가 이자수익).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한다. 이때 대출이자수익의 일부를 예금이자라는 명목으로 예금주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코인발행사의 경우 조달금리(예금이자)가 '0'에 수렴하므로 대출경쟁에서 은행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져,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대출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대출 수익모델 비교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트럼프의 親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FRB는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얹히면서, 디지털자산 가격 폭락은 금융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량의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는 코인런(coin-run) 발생 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국채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머니 확산

디지털자산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거나 범죄 및 사기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다수이며,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 CEO가 소송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많다.



3.3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관리 방향성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고, 통화량 급증, 금융시스템 안정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이 법안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조항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1:1의 비율로 보유,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인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준비금 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의무 부담 등이다. 제 1기 집권 당시 미 연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보다 FDIC를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기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은 투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수익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테더(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를 중심으로, 해당 수익모델을 살펴보겠다.

① 투자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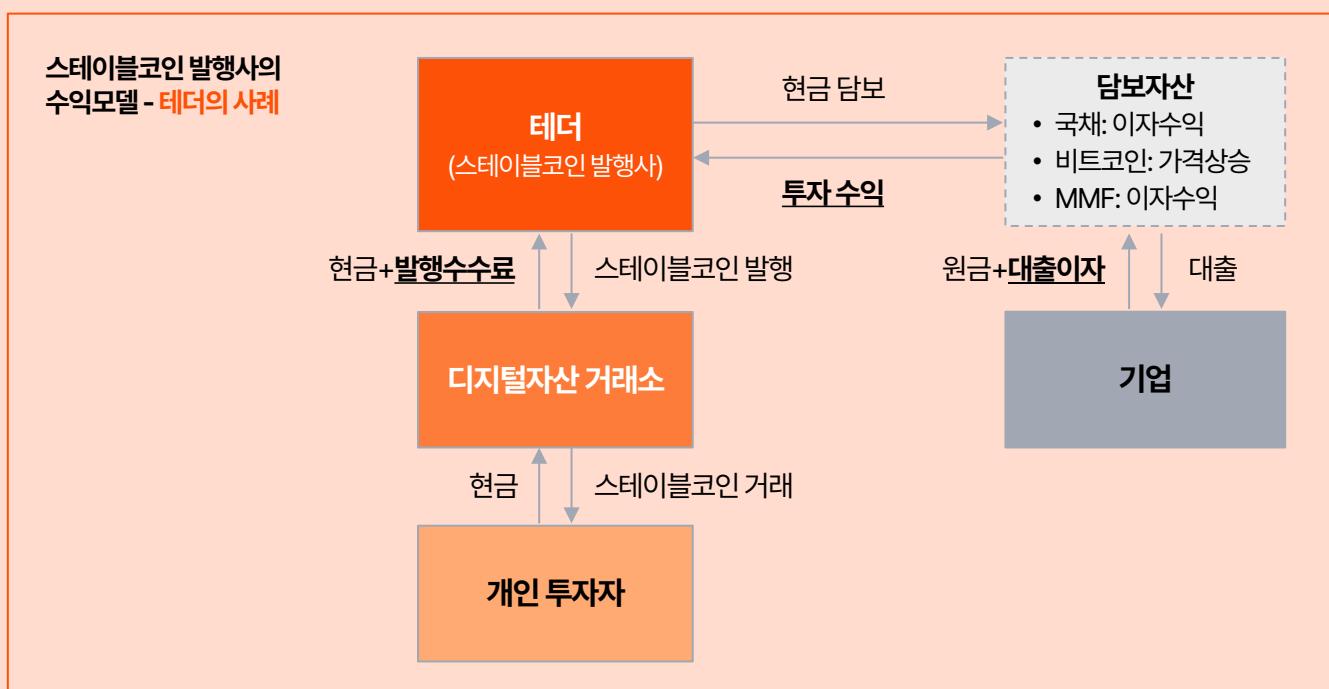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국채, 기업어음,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으며, 해당부문에 대한 투자수익을 얻는다. 테더는 2024년 13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주로 단기 미국채 이자와 비트코인, 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가장 안전한 국채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USDT를 계속 사용하는 한 애아서 국채수익률만큼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인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② 수수료수익

테더사에서 직접 USDT를 사기 위해 계정을 개설할 때 인증 수수료 150달러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입출금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법정화폐를 USDT로 전환(취득)할 경우 0.1%의 수수료가, USDT를 법정화폐로 전환(상환)할 때는 1,000달러와 0.1%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최소 거래금액은 10만 달러이다. 대부분 USDT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거래소나 기관이 USDT를 직접 매입하고 수수료를 낸다. 사실상 개인이 테더에서 직접 USDT를 구입하기는 어려우며, 대신 거래소를 통해 USDT를 확보할 수 있다.

③ 대출

테더는 자사 스테이블코인을 바탕으로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대출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누가 대출을 받는지,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담보 평가는 적절한지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WSJ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04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과 전망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104조 원,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17조 2천억 원으로 자본시장(15조 3천억 원, 코스피·코스닥 합계)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투자자 수도 1,825만명에 이르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 투자는 더 이상 소수의 리그가 아닌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투자 시장이 됐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며, 관련하여 다수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행정부의 공약 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4.1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

규제 감독 전반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체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제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① 이용자의 자산보호, ②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에 법정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설립 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통해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4.7월)의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객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에서 관리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 (감독규정) 기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 가능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심의 법률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2단계 입법안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출범한 이재명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친화적 태도와 맞물려 해당 법안의 제정 및 실행 가능성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장 참여자 규제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꾸준히 법인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의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¹⁾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거래량에서 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고, 법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4.7월)」 시행으로 기초적 제도가 갖추어졌고, 주요국에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매도 거래만 허용하고 2025년 하반기 중에는 매매 거래도 시범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금융-디지털자산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하반기 중 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 보유는 불가능할 예정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25.2월)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요구
2025년 상반기	매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집행기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25년 6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 대해 ‘25.2분기부터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 관련 계좌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자산거래소(‘25년 6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명계좌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2025년 하반기	매매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월 시행 → ‘21.12월 종료)을 통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를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 이후 해당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정부 규제 기조 등과 맞물려 현재까지 법인 실명계좌 발급 중단 관행 지속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25.5월)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구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검토	매도 시 시장영향 최소화: 매도 목적 제한(운영 경비 확보) 및 일일 매도 한도 도입 등
자금세탁 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하여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매도 목적 제한 및 사전·사후 공시의무 부과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금융상품 규제

미국('24.1월)·홍콩('24.4월)·영국('24.5월)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였다.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던 디지털자산이 ETF라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에 제도권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현물 ETF는 관련 금융회사의 해당 자산 현물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고,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라는 기준 방침과 배치되며,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의 ETF 기초자산 요건¹⁾을 위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였는데, 이는 선물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요 선거공약으로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해당 ETF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글로벌 주요국의 변화 및 한국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향후 디지털자산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1) ETF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지를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4.2 이재명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친화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토큰증권(STO) 법제화**,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공약

슬로건	공약	세부 내용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해 혁신로드맵 수립•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 규제 간소화 등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및 안정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검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통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

Source: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삼일PwC경영연구원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공시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안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단편적인 규제만을 해왔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향후 정무위원회 심사 – 공청회 –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당과 달리 한국은행은 통화주권 등을 근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라, 입법 이후에도 실행까지 여러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 내용('25.6월 발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 															
진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구분¹⁾하여 시장 진입 규율 금융위원회가 이를 전담하여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추진 															
발행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을 (i)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른바 '스테이블코인')과 (ii)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인가제로,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로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의</th><th>발행규제</th><th>요건</th></tr> </thead> <tbody> <tr> <td>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른바 '스테이블코인')</td><td>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td><td>인가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형태)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 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구비 (환불계획) 타당·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대주주 자격)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td></tr> <tr> <td>일반 디지털자산</td><td>그 밖의 디지털자산</td><td>신고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신고서에 다음 사항 기재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가 '형식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발행·운영 인력의 이력·정보 - 기술적 정보 - 산업적 사용 목적·활용 계획 - 총 발행량 및 기간별 발행·채굴량 - 이용자 보호계획 </td></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발행규제	요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	인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형태)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 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구비 (환불계획) 타당·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대주주 자격)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일반 디지털자산	그 밖의 디지털자산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신고서에 다음 사항 기재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가 '형식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발행·운영 인력의 이력·정보 - 기술적 정보 - 산업적 사용 목적·활용 계획 - 총 발행량 및 기간별 발행·채굴량 - 이용자 보호계획
구분	정의	발행규제	요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	인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형태)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 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구비 (환불계획) 타당·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대주주 자격)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일반 디지털자산	그 밖의 디지털자산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신고서에 다음 사항 기재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가 '형식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발행·운영 인력의 이력·정보 - 기술적 정보 - 산업적 사용 목적·활용 계획 - 총 발행량 및 기간별 발행·채굴량 - 이용자 보호계획 													
유통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신설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이하 '적격성평가위')를 두고, 디지털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결정²⁾ 															
공시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제도를 발행공시와 유통공시의 두 축으로 체계화³⁾ 															

Source: 의안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1) 업권 구분 및 진입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진입규제 체계를 기초로 하되,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일부 혼합·확장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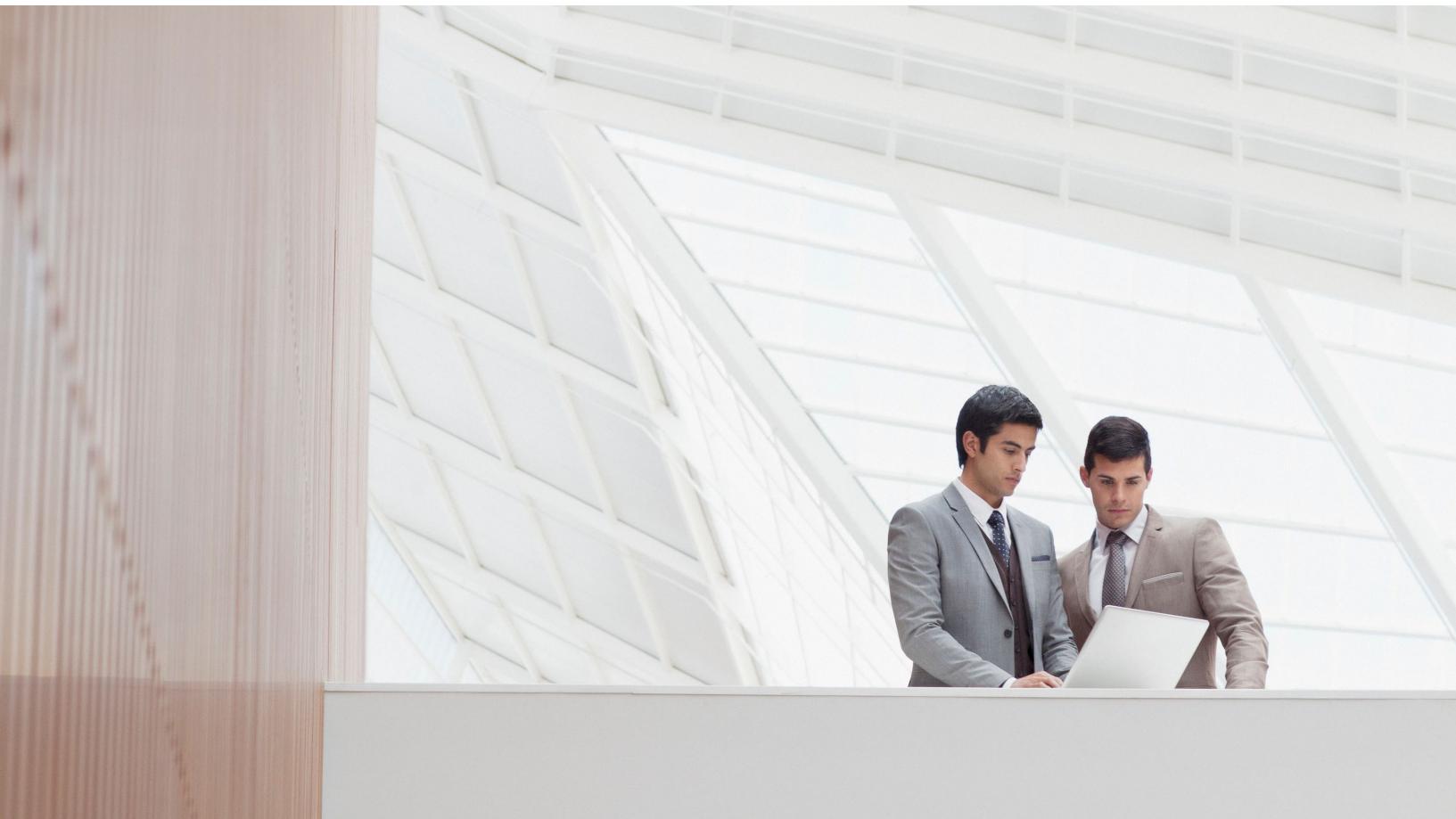
2) 기존에는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자율적으로 상장 및 폐지여부를 결정하였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해당 기능을 적격성평가위로 이관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

3) 유통공시의 경우, 종전에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자율적으로 일부 정보를 공시해 왔으나, 발행공시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SNS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백서(whitepaper)를 게시하는데 그쳐,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05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가 취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디지털자산시장 성숙도와 규제 체계·시장 구성원 등은 미국과 상당 부분 차이가 존재하지만, 디지털자산이 가진 무궁한 발전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각 경제 주체 모두 해당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우리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위험 요인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여, 신성장 동력으로의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여타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자금세탁·해킹·사기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법규 완비·규제 샌드박스 도입·시장 참여자 및 상품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육성 전략을 세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기존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단계적 도입을, ▲토큰증권(STO)처럼 신규 시장 창출 및 기존 산업 보완 특성이 강한 자산은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제언해보겠다.

① 규제 체계 마련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 2단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진행 중인데, 핵심 내용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유형, ▲상장 기준, ▲공시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앞다투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추세이나, 한국은 다소 뒤쳐진 상황이다. 입법의 시의적절성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추세를 따른 단순한 수용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BIS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위험한 유사화폐"로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구조와 통화주권을 감안한 현실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싱가폴
규제체계	X	△	O	O	O	O	O	O
소관법령	X	주(州) 정부 규제	자금 결제법	FSMA	MiCA	MiCA	주(州) 정부 규제	SFR

* 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MiCA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SFR =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Source: 자본시장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공통 내용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알고리즘형은 인정하지 않음
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준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준비자산 규제 마련.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준비자산을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인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제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
감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해, 건전성 규제는 물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발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제재조치 실행

Source: 법무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시장 참여자의 세부적 역할 규정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GENIUS Act」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강하게 제한¹⁾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주체의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 독점·금융 불안정·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무력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빅테크 및 거대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진출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이블코인 뿐 아니라, 토큰증권·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재 도입 논의 중인 각종 디지털자산에 대해 시장 주체별 세부적 역할 구분이 요구되며, 전통 금융사 및 빅테크 등의 신규 사업자가 해당 영역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1) 금융업이 주력이 아닌 상장된 대형 IT기업(빅테크)은 연준 의장, 재무부장관, 통화감독청 청장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통해서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

③ 민관 협력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전략적 활용 고려

민관협력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정부(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모델은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은행의 CBDC로 구성하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활용하면서도, 통화정책 및 유통량 통제는 중앙은행이 유지할 수 있어 정책적 안정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 기술을 활용해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형태로도 도입 가능하며, 향후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과 결합한 디지털 혁신 모델로도 발전 가능하여, 해당 방식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법인

금융당국이 법인의 디지털자산시장 접근과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법인의 시장 참여로 디지털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

법인의 성공적 디지털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내부통제 체계 구축



- 디지털자산 거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내부 규정 마련
- 자금세탁방지(AML)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 디지털자산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 구축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디지털자산 가격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마련
- 거래 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수립

세무·회계 대응 방안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세무 처리 방안 수립
- 디지털자산 회계 처리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향후 과세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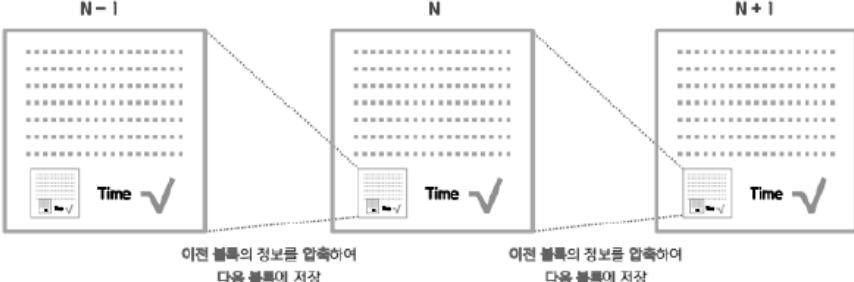
디지털자산 관리 역량 확보



-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또는 교육
- 거래소 선정 및 계좌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Appendix. 1] 디지털자산 관련 기초 용어

용어	설명
블록체인 (Block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이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약 10분을 주기로 생성되며, 거래기록을 모아 블록을 만들어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이전 블록에 연결하여 블록체인 형태가 됨 블록체인은 기존 블록과 신규 블록이 연결되는 구조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기술 <p style="text-align: center;">[블록체인의 구조]</p>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실행 계약으로, 계약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시스템 제 3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며, 거래 기록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거래 속도가 빠르며 거래 비용도 감소
디파이 (DeFi: Decentralized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비트코인 (Bit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 중앙은행이 없이,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
알트코인 (Alt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지칭 전 세계에 알트코인 종류는 2만 개가 넘으며, 대부분은 블록체인 기술로 작동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에는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테더, 솔라 등이 있음
이더리움 (Ethere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탈리 부테린이 개발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2대장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발행량 제한 없음 비트코인은 결제/송금과 같은 단순한 결제에만 쓰이지만,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로 대출/예금/보험 등 복잡한 거래까지 실행될 수 있다는 특징. 이는 블록체인에 계약내용을 적고, 계약조건이 충족될 때 암호화폐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덕분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통상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며,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에는 테더가 있음
NFT (Non-Fungible T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며,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NFT가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음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Appendix. 2] 디지털자산의 분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토큰 등 혼재되어 사용 중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관 및 법령마다 그 정의에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NFT, CBDC 등 새로운 자산 유형과 개념이 파생되면서 그 분류체계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참고목적으로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몇몇 분류 체계를 소개한다.

① 연관 종목(섹터)에 따른 분류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는 거래 지원 중인 디지털자산을 분류·평가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Upbit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s, UBCS)를 고안했다. 크게 다섯 가지 섹터를 구분하여 종목별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분류	설명	대표 디지털자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블록체인 생태계의 각종 인프라로,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반 서비스 지원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트코인(BTC)리플(XRP)체인링크(LINK)스텔라루멘(XLM)헤데라(HBAR)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이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앱들을 구현 가능하고 블록체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가능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전통적인 프로토콜과 경쟁을 하기 위해 탈중앙성을 확보하면서 확장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더리움(ETH)솔라나(SOL)트론(TRX)에이다(ADA)아발란체(AVAX)
디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의미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대출, 예금, 교환, 유동성 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중앙기관이 존재하여 이 기관에 본인의 자금을 수탁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장에 기반하여 글로벌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한 접근성 높은 통합된 유동성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테더(USDT)유에스디코인(USDC)유에스디에스(USDS)유니스왑(UNI)온도파이낸스(ONDO)
문화 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종 Web3.0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를 의미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소유권을 유저에게 돌려주고, 투명하게 기록하여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자신의 참여를 보상받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여 문화 경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뮤터블엑스(IMX)샌드박스(SAND)디센트럴랜드(MANA)엑시언피니티(AXS)칠리즈(CHZ)
밈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밍 기반의 디지털자산을 의미인터넷 상에서 널리 퍼지고 공유되는 유머나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문화 코드를 공유하고 싶은 이용자에게 생태계 참여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지코인(DOGE)시바이누(SHIB)페페(PEPE)오피셜트럼프(TRUMP)봉크(BONK)

Source: 업비트

②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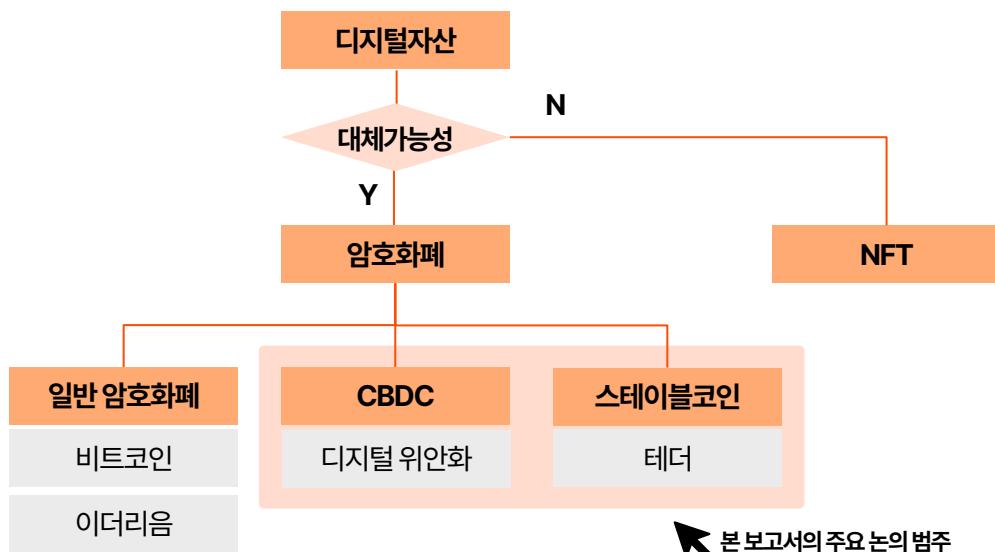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분류체계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의 분류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디지털자산을 내재된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불형·기능형·자산형(증권형) 등으로 구분한다.

구분	설명	예시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화폐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 송금이나 가치 이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도지코인(DOGE)
기능형 토큰 (Utility T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반의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디지털자산 플랫폼 내 지분 확보 용도로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더리움(ETH) 에이다(ADA) 이오스(EOS)
자산형 토큰 (Asset T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에 대한 권리, 수익 배당 등의 기능을 가진 토큰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고도 함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암호화폐(NFT)

Source: 언론종합, 업비트,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본 보고서에서의 분류

암호화폐와 NFT 모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지만 대체(교환)가능성 측면에서 상이하다. 암호화폐의 경우, 동일한 단위의 자산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이로 인해 다른 자산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각 자산마다 고유값이 매겨져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다.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Author Contacts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안정효 선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jeonghyo.ahn@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s

Financial Service

박동욱 Partner

dong-wook.park@pwc.com

Crypto Leader

이재혁 Partner

jae-hyuk.lee@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7W-RP-074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